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9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김영주·송재호·안민석

노웅래・송영길・조오섭

진성준 • 박상혁 • 김교흥

최강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대인 1억 5천만원)에서 그가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라 함)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 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하물 사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	
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	
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	
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
	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
	<u> 상한 경우</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